

본 간행물에는 5월 14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.
웹페이지 nyc.gov/dcwp 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.

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뉴욕 시민을 위한 중요 정보:

COVID-19 중 장례식 계획하기

COVID-19로 인해 장례식 준비를 비롯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.

COVID-19 시 전역 정보 포털에서는 [장례 및 안장 지침](#)을 제공합니다. 본 특별 간행물에는 추가 중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

뉴욕시에서 장례식장 찾기

장례식장을 찾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.

- nysfda.org에서 뉴욕주 장의사 협회(New York State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)
- health.ny.gov에서 뉴욕주 보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)

중요

- 면허를 소지한 장의사만이 사망자에 대한 처치, 이송 조치, 안장 또는 화장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사망 증명서 작성, 시신 운구, 묘지 또는 화장터 관련 조율, 묘지 또는 화장터로의 시신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.
- 장의사는 반드시 지침에 따라 직원 및 문상객을 비롯한 모두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. 여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장례식만, 제한된 참석 인원으로 치르는 것이 포함됩니다. (여러 장례식장에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원격 옵션을 제공합니다) 더불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전례 없는 요청들과 마주하고 있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지 장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. 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않기를 권고합니다.

최신 정보:

- 사망자가 뉴욕시 책임 검사관 사무소(NYC Office of Chief Medical Examiner, OCME)의 관리 하에 있다면, OCME에서 장례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보관소를 제공합니다.
- Andrew M.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[행정 명령](#)으로, 이제 어떤 주에서 면허를 받은 장의사라도 뉴욕에서 일하면서 서비스에 있어 전례 없는 요청을 돕는 것이 허용됩니다.

시에서 제공하는 매장을 원한다면 OCME에서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또한 OCME에서는 유해가 신원 미상 및/또는 무연고인 COVID-19 피해자에 대한 매장도 진행합니다.

자세한 정보는 nyc.gov/ocme를 방문하십시오.

장례식장 업무

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
- 통화상이든 대면이든 관계없이 장례 준비 시 일반 요금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요금표에는 모든 물품 및 서비스의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많은 장례식장에서 “패키지 상품”을 제공하지만, 귀하에게는 개별로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언제든지 장례식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동의했으며 제공받은 모든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귀하가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는 반드시 다른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운구하도록 허가해야 합니다.
- 서비스 및 물품의 내역 명세서(영수증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명세서에는 물품 및 서비스(현금 선납 항목 포함) 및 그에 해당하는 각 요금, 총 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-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행위
- 면허를 소지한 장의사가 아닌 사람이 장례 준비, 시신 준비, 매장 관리를 하는 행위
- 판매용으로 제공된 상품이 불만족스러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암시하거나 나타내는 행위
-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잘못되거나, 허위이거나,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
- 다음 사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
 - 사망 증명서 작성 또는 사망 증명서를 의학적으로 인증받는 것
 - 귀하를 대신해 제 3 자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 (“처리 비용”)
 - 귀하가 제공한 관을 관리하는 것
 - 귀하가 선택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상품
 -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 (단, 해당 요금이 장례 계획을 결정했을 때 공개되었으며 내역 명세서에 명기된 경우는 예외)

불만 제기

장례식장 요금에 대한 불만 제기

-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)에 nyc.gov/dcwp 또는 311 번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.

장례식장 또는 장의사에 대한 불만 제기

- 뉴욕주 보건부 장례국(Bureau of Funeral Directing)에 health.ny.gov 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.

묘지 또는 화장터에 대한 불만 제기

- 뉴욕주 장지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emeteries)에 dos.ny.gov 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.

장례식 비용 지불

-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 지원을 신청하세요. 저소득 뉴욕시 거주민은 사망한 저소득 뉴욕시 거주민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고 \$1,700 의 재정적 지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. 자격에 부합하는 비용은 \$3,400 를 넘을 수 없습니다. 해당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20 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정보는
 -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(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, HRA) 웹사이트 nyc.gov/hra 에 방문하십시오
 - 1-929-252-773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

-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향군인 매장 혜택을 신청하세요.
재향군인, 군요원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타 혜택과 함께 재향군인(Veterans Affairs, VA) 국립 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
 - 웹사이트 va.gov/burials-memorials 에 방문하십시오
 - 1-800-827-10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
- 전화로 무료 재무 상담을 받으세요.
nyc.gov/TalkMoney 에서 상담 예약을 하세요.
- 유언 및 유산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.
 - 뉴욕 법률 지원 그룹(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, NYLAG) COVID-19 법률 자문 핫라인 1-929-356-958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(월~금, 오전 10 시부터 오후 1 시)
 - 웹사이트 LawHelpNY.org 에 방문하십시오
- 모든 지출 내역을 계속해서 추적하세요.
납세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.

중요 서류 작업 및 통지

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.

- 중요 서류 취합.** 여기에는 유언, 생명보험 증서, 주식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.
- 사망 증명서.** 담당 장의사가 사망 증명서를 주문할 수 있으며, 또는 뉴욕시 보건부(NYC Health Department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- 온라인 웹사이트 nyc.gov/health
 - 이메일 nycdohvr@health.nyc.gov
 - 전화 1-347-396-7962
 - 화상 채팅 dohchat.dirad.com/chat (월요일~금요일, 오전 9 시~오후 5 시)

다음 대상에게 통지하십시오.

- 사망자의 고용주**
(해당되는 경우).
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가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성명, 소셜 시큐리티 번호, 사망일, 귀하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십시오. 그 이후 해당 회사에서 지불 가능한 혜택 처리를 즉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Medicare.** 사망자가 Medicare 보장을 받고 있던 경우.
 - 온라인 웹사이트 medicare.gov
 - 전화 1-800-633-4227

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가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성명, 소셜 시큐리티 번호, 사망일, 귀하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십시오.
- 소셜 시큐리티.**
 - 전화 1-800-772-1213 (TTY 1-800-325-0778)

온라인으로는 사망 신고 또는 유족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사망한 달 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혜택을 소셜 시큐리티에 반납해야 합니다.

추가 자료

연방 거래 위원회(Federal Trade Commission, FTC) *(장례식장도 규제)*

- consumer.ftc.gov 를 방문해 [장례 요금 체크리스트](#) 및 장례 시 [용어집](#) 을 포함한 [자료](#) 를 참고하십시오.
- 또 FTC [장례 규정](#)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도 받고 있습니다. FTC 는 개인의 이의 제기를 중재하지는 않으나, 일정한 위반 패턴을 발견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consumer.ftc.gov 에 방문하거나 1-877-FTC-HELP(382-4357)번에 전화하십시오(TDD: 1-866-653-4261).

NYC Well *(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24 시간 기밀 보장)*

- 전화 1-888-NYC-WELL (1-888-692-9355)
- 65173 번으로 "WELL"이라고 문자
- 온라인 채팅 [NYC.gov/nycwell](https://nyc.gov/nycwell)

COVID-19 반려동물 핫라인 *(사망자에게 반려동물이 있었으며 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)*

- 1-877-204-8821 번(월~금,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)